

*필요서류: 실업인정 신청서, 근로계약서(재직증명서)

*팩스: 0508-8230-0614

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별지 제82호서식) <개정 2019. 7. 16.>

실업인정(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)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앞쪽,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 _____ 접수일 _____ 처리기간 : 5일

신청인 (수급자격자)	①성명	②주민등록번호
	③주소	(전화번호: _____) (휴대전화번호: _____)

④지정된 출석일(실업인정일) _____ ⑤실업인정대상기간 _____

⑥지급계좌	신규신청 [] 은행명: _____ 계좌번호: _____ 예금주: _____ 변 경 [] *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"압류방지 전용통장" 발급받아 기재
-------	--

⑦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사실 등 확인	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[] 없음 [] 있음 (근로일: _____ 소득(예정)액: _____)
	사업자등록 (자영업개시) [] 없음 [] 있음 (등록일(시작일): _____ 사업내용: _____)
	산재휴업급여 [] 없음 [] 있음 (재해일: _____)

⑧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	구직활동	일자	업체명	전화번호	직종	구직방법	구직활동 결과

자영업 준비활동	취업(예정)내역 [] 취직 [취직(예정)일: _____ 회사명: _____ 전화번호: _____] [] 자영업 [시작(예정)일: _____ 사업내용: _____]
	구직활동 외 활동사항

[] 고용센터 집체교육 [] 취업확정자
[] 직업지도 참여(취업특강 등) [] 사회봉사활동 참여자
[] 집단상담 프로그램 [] 부당해고 구제신청자
[] 직업훈련 수강 [] 재취업활동 없는 자
[] 기타 []

⑨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하여야 할 활동	[] 구직활동() [] 자영업 준비활동 [] 고용센터 집체교육 [] 직업훈련 수강 [] 직업지도 참여(취업특강 등) [] 사회봉사활동 참여 [] 집단상담 프로그램() [] 기타(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⑩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	[]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*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[] 전자우편(이메일: _____)
---------------------	--

「고용보험법」 제44조제2항·제3항 및 제69조의9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·제66조 및 제93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안정을 신청하며,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신청인 _____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수급자격증 1부 2. (상해)진단서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면접확인서, 구직활동 내역서 등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3.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증명서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※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.

실업인정 유형	[] 실업인정일 변경 []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[] 잠정실업인정 [] 해고효력을 다루는 자의 실업인정 []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[] 유족의 청구에 따른 실업인정							
지급 사항	처리	실업인정일수	구직급여 산출명세	지급액				
접 수	접수연월일	접수번호	결재	담당	팀장	과장	청장/지청장	결재연월일